

제342회 임시회
2015. 9. 1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-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9. 1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2일

-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)

가. 제안사유

-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종료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」를 폐지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폐지조례안은 2013년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종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조례 발취

□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삭제

③ 위원회는 재정적 지원 요청시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대회 종료후 대회기간이 속한 해의 연말까지 사업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